전국규모연맹체규정

제정 2003. 1. 1. 전면개정 2017.12. 6. 개정 2019.12.12. 개정 2020. 9.24. 개정 2020.12. 3.

제1장 총 칙

- 제1조(근거 및 명칭) ① 이 규정은 대한골프협회(이하 "협회"라 한다) 정관 제5조 제3항에 따라 가입된 전국규모연맹체(이하 '연맹'또는 '회원'이라 한다)의 조 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. 〈개정 2020. 9.24.〉
 - ② 연맹의 명칭은 "한국○○○골프연맹"이라 하고, 그 영문은 "KOREA ○○○"(약칭 "○○○○")라 한다.
- 제2조(목적 및 지위) 연맹은 골프 아마추어 정신에 입각하여 각급별 골프 선수를 육성하고, 골프의 저변 확대와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3조(소재지) 연맹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.
- 제4조(사업) ① 연맹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한다.
 - 1. 연맹에 관한 기본방침의 심의 결정
 - 2. 연맹 관할 대회의 주최 및 주관
 - 3. 동일급 국제교환경기의 개최 및 참가
 - 4. 골프 교실(강습회) 개최
 - 5. 그 밖의 골프 진흥 및 연맹 규약(정관)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 - ② 제2호, 제3호의 사업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수행한다.

제2장 조 직

- 제5조(조직) ① 연맹은 협회에 등록한 동급의 단체로 하되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.
 - 1. 초등학교급의 등록 단체로 구성되는 초등학교연맹
 - 2. 중·고등학교급의 등록 단체로 구성되는 중·고등학교연맹
 - 3. 대학(교)급의 등록 단체로 구성되는 대학연맹
 - 4. 일반부(군인 포함) 개인 회원으로 구성되는 미드연맹
 - ② 연맹체의 구성은 제1항 1호 내지 4호를 원칙에 의하되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

- 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분리하여 연맹체를 구성할 수 없다.
 - 2. 각급 연맹은 남녀별로 구분하여 조직할 수 있으나 각각 10개 단체 이상이 등록되어야 한다.
- ③ 초등, 중·고등, 대학 연맹은 교육부 및 시·도 교육청이 인가하는 학교 또는 이 에 준하는 학교로 해당 연맹에서 정한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친 학교로 구성한다.
- ④ 연맹은 시·도 연맹체를 둘 수 없다.
- 제6조(권리와 의무) ①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 - 1. 협회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 - 2. 협회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
 - 3. 협회가 주최.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
 - 4. 협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.주관할 수 있는 권리
 - 5. 해당 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협회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
 - ② 연맹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 - 1. 협회의 정관, 제 규정 및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 - 2. 사업계획서와 예산서,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해당 단체의 총회 종 료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③ 연맹에 등록된 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권리를 갖는다.
 - 1. 연맹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 및 의결할 권리
 - 2. 연맹에 건의 및 소청할 권리
 - 3. 연맹이 주최.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권리
 - ④ 연맹에 등록된 단체는 연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의무를 갖는다.
 - 1. 연맹의 규약(정관), 제 규정을 준수할 의무
 - 2. 연맹의 총회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
- 제7조(관리단체의 지정) ① 협회는 연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.
 - 1. 협회의 정관 등 제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
 - 2. 60일 이상 연맹단체장의 궐위 또는 사고
 - 3. 회원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
 - 4.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정상적인 사업수행 불가
 - ② 협회가 관리단체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연맹 또는 그 대표자에게 소명의 기

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-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·도종목단체의 임원은 관리단체 지정된 날에 그 직에서 즉시 해임된다.
- ④ 관리단체는 협회 총회 개최 시 재적대의원 수에는 포함되나 출석대의원 수에는 포함되지 않으며, 의결권도 행사할 수 없다.
- ⑤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관리단체 지정 및 운영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
- 제8조(가입 및 탈퇴 등) ① 제5조에 따라 협회의 회원이 되려는 단체는 협회 회원가 입탈퇴규정 제4조의 가입요건을 구비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는 탈퇴서를 제출하고 협회에서 탈퇴할 수 있다.
 - ③ 연맹이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여 협회의 회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거나 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는 협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써 제명하거나 정회원단체는 준회원단체로, 준회원단체는 인정단체로 강등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단체를 강등 또는 제명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결에 앞서 해당 단체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
제3장 총 회

- 제9조(총회의 구성) ① 학교급 연맹 총회는 30인 이상 100인 범위 내에서 제5조제1 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등록한 단체의 장으로 구성한다.
 - ② 학교급 연맹 대의원으로 등록한 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나,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내부 인사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등록한 팀은 해당회원을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출석하게 한다.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.
 - ③ 미드연맹 총회는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등록한 개인회원이 추천하는 30인이상 100인의 범위 내에서 구성한다.
 - ④ 미드연맹 대의원이 되려면 개인회원 5인의 서면 추천을 받아야 하며, 추천받은 사람이 도중에 회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 대의원의 자격도 즉시 상실된다.
 - ⑤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며, 학교급 연맹 대의원의 경우 제2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추천받은 사람이 대의원이 된다. 이 경우 미드연맹은 대리인을 지명할 수 없다.
 - ⑥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는 경우에는 총회 3일 전까지 연맹에

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⑦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- ⑧ 대의원수가 30인 미만으로 총회 구성에 곤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회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대의원을 구성할 수 있다.
- 제10조(총회의 기능)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- 1. 회원 가입 및 제명
 - 2. 재산의 처분, 매도, 증여, 담보, 대여, 취득, 기채에 관한 사항
 - 3. 임원의 선출 및 이사의 증원, 임원 해임에 관한 사항
 - 4. 연맹의 해산 및 규약(정관) 변경에 관한 사항
 - 5. 사업 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
 - 6. 기타 중요사항
- 제11조(총회의 소집) ① 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하여 야 하며,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 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단, 학교급 연맹은 학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개최할 수 있다.
 -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연맹의 장이 개최하여야 한다.
 - 1. 연맹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
 - 2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3.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- 4.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③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을 요구한 이사나 대의원 및 감사가 협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- ④ 임시총회의 소집은 개최 7일 전까지 안건·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-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- ⑥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.
- 제12조(의장) ① 연맹의 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. 다만,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

-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.
- ② 제11조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총회의 경우에는 해당 총회의 소집을 요구한 이사, 대의원 또는 감사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출석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- 제13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 - ② 위임장에 의한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임원의 불신임) ① 총회는 연맹의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임원 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임원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, 일부 임원을 해임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선출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해야 한다. 다만, 해당 임원이 기소된 경우에는 경과기간의 제한을 두지아니한다.
 -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발의되고, 재적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,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임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
 -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.
 - ⑤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빠른 시일 내에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연맹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.
- 제15조(총회 의결 제척사유)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-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

제4장 이 사 회

- 제16조(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) ① 연맹의 이사회는 연맹의 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 - ② 연맹의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- 1.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
 - 2. 규정의 제정 및 개정
 - 3. 기본재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
 - 4.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- 5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- 6.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
- 7. 기타 중요사항
- 제17조(이사회의 소집) ① 연맹의 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된다.
 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 · 일시 ·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으로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.
 - 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- 1.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
 - 2. 제26조제4항제4호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가 소집되지 않은 경우, 소집을 요구한 이사 또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중 연장자가 이사회의 소집권자가 되고,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이사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.
 - ⑤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.
 - ⑥ 이사는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으로 자신과 연맹의 이해가 상반될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⑦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 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. 〈신설 2020.12. 3.〉
- 제18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- 제19조(긴급한 업무의 처리)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으며,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.
 - ② 회장은 회의에 올리고자 하는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5장 임 원

제20조(임원) ① 연맹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- 1. 회장 1명 〈개정 2020.12. 3.〉
- 2. 부회장 7명 이하(전문<u>체육</u>, 생활<u>체육</u>, 지역<u>체육</u>, 여성체육<u>을</u> 대표<u>하는 인사</u> 1명씩 포함) 〈개정 2020.12. 3.〉
- 3. 이사 15명 이상 29명 이하(회장, 부회장 포함)
- 4. 감사 2명
- ② 제1항제3호에서 정한 임원의 수는 연맹 총회 의결로 10명 이하로 증원할 수 있으나 사전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(이사로 한정)
- ③ 연맹의 임원은 다른 임원의 직위를 겸직하거나 등록선수로 활동 할 수 없다.
- ④ 임원은 등록선수로 활동할 수 없으나 연맹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 승인을 받아 이를 달리할 수 있다.

제21조(회장의 선출기구)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.

- ② 회장후보자는 학식과 덕망, 경험이 풍부하며, 연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.
- ③ 연맹은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일 21일전부터 7일간 후보등록 및 선거 관련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.
- ④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 개최 20일 전부터 14일전까지 연맹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.
 - 1. 회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
 - 2. 회장 후보자 이력서 1부
 - 3. 기타 연맹이 요구하는 증빙 서류
-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이 불가피한 연맹은 협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협회는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.
- 제21조의2(회장선거 후보자 등록) ① 회장선거 후보자는 연맹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, 등록 시에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.
 - ② 회장 후보자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, 기탁금의 금액 등 회장선거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'회장선거관리규정'에 따라 별도로 정한 후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21조의3(당선인 결정) ①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

득표를 한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- ②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③ 후보자가 1인인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8조 임원의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을 경우 그 1인을 투표없이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- 제21조의4(기탁금 반환) ① 연맹은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납부받은 기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30일 이내에 후보자에게 반환하여야하며, 반환되지 않는 기탁금은 연맹에 귀속된다.
 - 1.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
 - 2.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
 - ② 본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기탁금반환의 기준으로 정한 유효투표총수의 비율 기준은 100분의 25범위 이내에서 상향시킬 수 있다.
- 제22조(선거의 중립성) ① 연맹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중립적인 인사로 선거 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.
 - ② 연맹의 임·직원은 협회의 회장선거, 연맹 및 시·도 협회 등 체육단체의 선거 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, 협회, 연맹 및 시·도 골프협회 등 체육단체의 다른 임·직원, 대의원, 선거인단 등에 대하여 이러한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, 이에 따른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연맹의 임원이 제2항을 위반하는 경우 재적이사(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이사로 한다) 3분의 1 또는 재적대의원(다른 체육단체의 경우 해당단체의 재적대의원으로 한다) 4분의 1의 동의로 관련자에 대한 징계를 협회에 요구할수 있다. 이 경우 협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자를 징계하여야 한다.
 - ④ 협회는 연맹의 선거공정성 확보를 위해 연맹에 회장선거 관리 등에 관하여 개선을 지시할 수 있다.
- 제23조(회장의 사고 또는 궐위 시 직무대행) ①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경우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협회에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한다.
 - ② 직무대행의 기간이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직무대행자는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, 정책의 전환, 인사의 이

- 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으나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다.
-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람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직무를 대행하며,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회장을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
- 제24조(부회장, 이사 및 감사의 선임) ① 연맹의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수 있으며,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된 임원 선임권한의 기한은 총회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받은 이후 첫 번째 이사회 개최 직전까지 협회에 인준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.
 - ③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충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1.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% 초과 금지
 - 2. 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(선수위원회 포함)에서 추천한 국가대표선수 출신자 가 재적 임원수의 20%이상 포함
 - 3. 생활체육관계자(선수 출신은 제외)가 재적임원수의 30%이상 포함
 - 4. 비경기인(학계, 언론계, 법조계 등)이 재적임원수의 20%이상 포함
 - 5. 여성이 재적 임원수의 30%이상 포함
 - ④ 대의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연맹의 임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(회장, 부회장 포함)의 20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이 경우 1개 단체에서 1명만 임원으로 선임될 수 있다.
 - ⑤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.
 - ⑥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며, 행정감사 1명, 회계감사 1명을 선임한다.
 - ⑦ 임원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인준을 받아 취임하며, 인준 후에 임원의 결 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인준에 하자가 있는 경우 협회는 직권으로 인준을 취 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.
- 제25조(동일인의 겸직제한) ①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연맹체 또는 협회 내 다른 연맹체의 대의원이나 임원을 겸할 수 없다.
 - ② 동일인이 다른 종목의 연맹체에서 회장선출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전일까지 현재 소속 연맹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.
 - ③ 연맹의 임원 중 회계감사는 다른 종목 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.
- 제26조(임원의 직무) ① 회장은 연맹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무보수 비상근

명예직으로 한다.
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할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, 회장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-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연맹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- 2. 연맹의 보조금 등 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회계를 감사하는 일 〈신설 2020.12. 3.〉
 - 3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를 감사하는 일
 - 4. 재산상황 또는 예산집행 업무집행에 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, 총회 또는 협회에 보고하는 일〈개정 2020.12. 3.〉
 - 5. <u>제4호</u>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〈개정 2020.12. 3.〉
- ⑤ 연맹의 임원이 해당 단체 또는 체육회, "회원단체, 시·도체육회 및 그 회원 단체 또는 지회"(이하 "체육회 관계단체"라 한다)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1.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
 - 2.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
 - 3.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
- ⑥ 연맹의 임원이 연맹 또는 협회, 협회 관계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비위의 사유로 협회의 감사처분을 받아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- ⑦ 연맹의 임원이 연맹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.
- ⑧ 연맹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협회의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협회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.
- 제26조의2(임원의 보수)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 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- 제27조(임원의 임기) ① 회장,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회계감사는 연임횟수를

제한하지 않는다. 〈개정 2020.12. 3.〉

- ② 삭제<2020.12. 3.>
- ③ 삭제<2020.12. 3.>
- ④ 삭제<2020.12. 3.>
- ⑤ 삭제<2020.12. 3.>
- ②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.
- 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, 임원 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-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회장의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에 4년을 추가한 기간으로 보며, 이 경우 제33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1회 재임한 것으로 본다. 〈신설 2020.12. 3.〉
- 제27조의 2(연임 횟수의 산정) ①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다음 각 호에 따르며, 시도골프협회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.
 - 1. 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2. 부회장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 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 - 3. 이사 및 감사(회계감사 제외)의 연임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한다.
 - ②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 시 연임 여부는 전임 임기의 만료일과 후임 임원으로 서의 취임일의 연속여부와 관계없이 전후 임기 내 임원으로서 활동한 이력이 있 으면 1회 연임으로 산정한다(임기 내 사임한 경우도 포함한다).
 - ③ 제27조제3항의 보선된 임원과 증원으로 선임된 임원은 재임기간과 관계없이 1회 재임한 것으로 산정한다. 다만, 사임한 임원이 동일 임기 내에 임원으로 보선 및 증원된 경우는 재임 횟수로 추가 산정하지 않는다.
 - ④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맹의 임원은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18조, 제20조에 따라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.

[본조 신설 2020.12. 3.]

- 제28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연맹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(회장으로 한정한다)

- 2. 「국가공무원법」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-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 구 회원, 협회 소속의 연맹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 구 회원단체(연맹 포함)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〈개정 2020.12. 3.〉
-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 구 회원단체(연맹 포함)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〈개 정 2020.12. 3.〉
 - 가.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 횡령·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
 - 다.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- 6. 국회의워
- 7. 사회적 물의, 협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기타 부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
- 8. 협회 이사회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연맹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 일로부터 <u>5년</u>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(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) 〈개정 2020.12. 3.〉
- ② 회장의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)은 임원이 될 수 없다.
- ③ 연맹과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·직원은 임원이 될 수 없다. 다만, 연맹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연맹은 해당자로부터 연맹과 위법·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임원과 연맹 간 거래관계에 위법·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협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.
- ④ 임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, 서약서 제출 후 사실이 아닌 경우에는 즉시 해임되며 영구히 임원에 선

임될 수 없다.

- 제29조(임원의 사임 및 해임)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이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,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.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.
 - ② 연맹이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해임된다.
 - ③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.
 - 1. 제24조제7항에 따라 협회로부터 인준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
 - 2. 제2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 되거나 선임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
 - 3. 동일 종목의 시·도 협회 및 다른 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이 된 사람이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
 - 4. <u>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대행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한 때</u> 〈개정 2020.12. 3.〉
- 제29조의2(명예직의 위촉) ① 연맹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명 과 고문 등 명예직을 둘 수 있다.
 - 1.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,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.
 - 2. 고문 등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.
 - ② 제28조제1항 각 호(제6호 제외)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명예직 지위를 가질 수 없다.
 - ③ 명예직에 위촉된 사람에게는 보수 또는 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.

제6장 각종 위원회

- 제30조(각종 위원회의 설치) ① 연맹은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자문기구로 대회위원회, 경기력향상위원회(선수위원회 포함), 경기(심판)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설치한다.
 - ② 연맹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제1항 이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상(위원장, 부위원장 포함)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- ④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, 동일 대학 출신자 및

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 수의 20%를 부득이하게 초과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구성할 수 있다.

- ⑤ 연맹의 등록선수는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- 제31조(스포츠공정위원회) ① 연맹은 제 규정 관리, 포상 또는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설치한다.
 - ②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<u>총회에서 선임한</u>다. 다만, 총회의 의결로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한 경우, 회장은 외부인사가 과반수 이상 포함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의와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하여야 한다. 〈개정 2020.12. 3.〉
 - 1. 법학자, 법조인 등 법률업무 종사자
 - 2. 스포츠 관련 분야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3. 스포츠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4. 인권 분야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회원단체(연맹 포함)로부터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 〈개정 2020.12. 3.〉
 - 2. 협회와 협회 관계단체의 임·직원인 사람
 - ④ 이 규정 외에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연맹이 협회의 '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'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.
- 제32조(위원회의 운영 등) ① 제2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에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②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보수·급여성 경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구체적인 사용목적을 명시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있다.
 - ③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각종 위원회의 설치·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해당 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32조의2(위원의 제척 및 회피) ① 제30조 및 제31조의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그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- 1. 심의 대상자가 친족(「민법」제777조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)인 경우

- 2. 위원 본인, 배우자 또는 직계존·비속이 심의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한 용역을 수행하는 법인·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
- 3. 심의 대상이 되는 업무 및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
- 4. 그 밖에 심의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
- ②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안의 심의에 대해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 야 한다.

[본조 신설 2020.12. 3.]

제7장 재산 및 회계

- 제33조(재산의 구분) ① 연맹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며,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.
 - 1. 부동산
 - 2. 기금
 - 3. 운영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로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 - 4. 이익잉여금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재산
 -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.
 - ③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34조(재원) 연맹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연맹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.
 - 1.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
 - 2. 사업수익금
 - 3. 지원금 및 보조금
 - 4. 회비(회원등록비, 대회 참가 회비 등)
 - 5. 기타 수입금
- 제35조(잉여금의 처리) 연맹의 매 회계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.
 - 1. 이월결손금의 보전
 - 2. 차기 회계연도 목적사업비로 이월
 - 3.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
- 제36조(재산의 관리) ① 연맹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 또는 담보로 제 공하고자 할 때, 연맹이 재정적·업무적 부담을 하거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 에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차입금(해당 회계

연도 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을 제외한다)에 대하여도 이와 같다.

- ② 연맹이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.
- 제37조(재산의 대여 및 사용) 연맹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, 그 외의 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- 1. 협회, 연맹, 다른 회원종목단체, 시·도체육회 및 시·도회원단체의 임·직원
 - 2. 연맹의 임·직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(비법인 단체를 포함한다)
 - 3. 협회, 연맹, 다른 회원종목단체, 시·도체육회 및 시·도종목단체 등과 재산 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
- 제38조(회계연도) 연맹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- 제39조(예산 편성 및 결산) ① 연맹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중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제40조(회계감사 등) ① 연맹은 회계 감사를 연 1회 실시하여야 한다.
 - ② 연맹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를 원칙으로 하고, 재산 및 회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연맹이 별도로 정한다.
- 제40조의 2(협회의 감사·징계 등) ①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맹에 대하여 조직운영, 사업 및 회계 등 전반에 관하여 조사·감사할 수 있다.
 - ② <u>대한체육회(이하 '체육회')가</u> 제1항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협회에 조사·감사를 요구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 〈개정 2020.12. 3.〉
 -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사·감사한 결과 업무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면 <u>협회는</u> 관계 <u>법령 및</u> 규정에 따라 해당 단체와 관계자에 대해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, <u>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</u>를 하거나 해당 단체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단체는 협회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. 〈개정 2020.12. 3.〉
 - ④ 제3항에 따른 조사·감사 결과,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밝혀지고, 체육회의 장이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맹과 관계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또는 시정조치, 직무관련 범죄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도록 협회에 요구할 때에는 특별

- 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단체는 이를 따라야 한다. 〈신설 2020.12. 3.〉
- ⑤ 제4항에 따른 체육회의 조사·감사 및 징계 요구 등은 체육회의 '감사규정' 과 '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'에 따른다. 〈신설 2020.12. 3.〉
- ⑥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결과 및 관리단체의 조속한 정상화,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 등을 위하여 협회 직원을 파견 할 수 있다.
- ⑦ 협회가 제6항에 따라 협회에 파견하는 직원은 연맹 이사회에 의결권한은 없으나 발언할 수 있는 정원외 이사로 한다. 〈개정 2020.12. 3.〉
- 8 연맹은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고발대상, 고발주체, 고발기준 및 시기,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협회 임.직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기준을 준용하여 세부고발 기준을 제정 및 시행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20.12. 3.〉

제8장 사무국

- 제41조(사무국) ① 연맹은 사무국을 두며, 사무국장과 직원을 둔다.
 - ② 사무국장(연맹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)은 회장의 지휘·감독을 받아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며, 소속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 - ③ 연맹 임원의 친족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다만,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.
 - ④ 사무국장 및 직원은 형의선고·징계처분 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및 취업규칙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·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하다.
 - ⑤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은 그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 - ⑥ 연맹의 임원(감사는 제외함)의 연임 횟수 제한에 따라 심의의 대상이 되는 사람 중 예외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및 협회 정관 제34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맹의 국장 등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.
- 제42조(사무국의 운영 등) 연맹은 사무국의 구성, 인사 및 복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협회의 규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며, 아래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. 다만, 별도의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협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.
 - 1. 사무국 직원 인사에 관한 사항
 - 가. 직원의 신분보장 및 근로조건(보수 및 복무 등)
 - 나. 외부 인사 3명 이상이 포함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인사위원회 구성

- 다. 채용 시 공개채용 원칙 및 체육인 출신에 대한 기회제공
- 라. 형사사건으로 기소 또는 정직 이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직원에 대한 직위해제
- 2. 모든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사항

제9장 보 칙

- 제43조(해산) 연맹은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 또는 협회의 설립 승인 취소로 해산한다.
- 제44조(규약 변경) ① 연맹의 규약(정관)을 변경할 때에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 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협회에 보고하고, 통보받은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총회에서 의결하여 협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- ② 협회가 연맹의 규약(정관)을 보고받은 후 이에 대한 개・수정 및 삽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이에 대한 반영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연맹은 이에 따라야 한다.
- **제45조(규정 제·개정 등)** ① 연맹은 이 규정에 따라 규약(정관)을 제·개정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 이외에 연맹의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연맹의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·개정한다.
 - ③ 연맹의 규약(정관) 및 규정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46조 (규정의 해석) ① 전국규모연맹체규정은 연맹 규약(정관)에 우선하며, 연맹의 규약(정관)을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라야 한다.
 - ② 연맹이 협회의 정관, 전국규모연맹체규정 및 기타 규정을 준용할 수 없거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협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.
- 제47조(제한사항) 연맹이 협회의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이나 협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6조제1항의 협회에 대한 권리사항을 제한(정회원단체의 경우,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)하거나 협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, 회수,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.
- 제48조(경영공시) ① 연맹은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공시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결과, 예산집행내역, 임원의 업무추진비집행 내역, 감사결과와 그 외 연맹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 <2003. 1. 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기존 전국규모 연맹체 지침에 의거 설립된 연맹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개정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한다.

부 칙 <2017.12.0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연맹 임원의 연임 횟수 산정에는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 임원의 임기를 포함한다. 다만, 이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연임이 된 임원의 임기는 2020년 12월(감사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)까지로 한다.
 - ② 이 규약(정관) 제21조 제2항 및 제27조 제3항 제4호에 기간의 산정은 시행일 이전 회장의 사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2019.12.12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2020. 9.2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20.12. 3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 제 2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새로 선임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. 〈신설 2020.12. 3.〉 제2조(부칙개정) 이 규정 부칙(2017.12. 6.) 제2조 제1항 중 "임원의 임기를 2020년 12월까지"를 "2021년 정기총회일 전날까지로 한다. 감사의 임기는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. 〈신설 2020.12. 3.〉